

◆ 퇴직연금 세제의 종합검토와 개선방향

김대환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1. 검토배경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제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 증대, 개인의 장수리스크 증대 등으로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그 이유는 공적연금의 수급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개인의 기대수명 증대에 따른 장수리스크는 더욱 증대될 것이 때문임.
- 이에 따라 OECD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축소시키는 대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음.
 - 주요국은 연금의 축소나 보험료의 인상(그리스),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민간영역으로 전환(독일), 공적연금 전체의 민영화(칠레) 등의 방법으로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대신 퇴직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해 왔음.
 - 우리나라의 퇴직 후 연금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훨씬 못 미치는 45% 수준이며,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표 1>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비교

(단위 : %)

보장구분		권고수준	미 국	영 국	일 본	한 국
1층	국민연금	30~35	41	31	34	25
2층	퇴직연금	30~35	38	39	26	12
3층	개인연금	10 이상	10 가정			8
합 계		70~80	89	80	70	45

주 : 류건식 외 2,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3.
OECD,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2009

- ☐ 이러한 점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2009년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연금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활성화가 연금세제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즉,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기 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2> 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N = 314, 1, 2, 3순위 복수응답)

제도 개선 사항	기업 및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중도인출 조건완화 및 중간정산제도 폐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	노후준비의 필요성 인식 강화	제도 형태 및 운영 구조의 다양성
비율	108.0%	52.4%	39.2%	30.3%	28.3%

자료 : 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09. 10.

- ☐ 이에 본고는 퇴직연금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일의 퇴직연금 세제체계와 비교·검토한 후에 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세제체계를 적립금 납입단계, 적립자산 운용단계, 퇴직급여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2.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현황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는 적립금 납입단계, 적립자산 운용단계, 퇴직급여 수령단계로 구분되며, 수령단계에서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됨.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제도는 법인세로 사내에 적립되는 금액과 사외에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 달리 과세하고 있음.

가.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요

-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제도는 2006년 1월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온 연금소득 세제체계의 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제는 소득세이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적립금을 부담하는 단계에서, 적립금을 이용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적립하고 운용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제도는 법인세로 사내에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와 사외에 적립하는 과세로 구분될 수 있음.

<표 3>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대 상	과세적용 구분	적용 과세제도	과세적용
근로자	적립금 납입단계	소득세	소득공제(Exempt)
	적립금 운용단계		비과세(Exempt)
	퇴직급여 수령단계		과세(Taxed)
사용자	사내 적립	법인세	손금산입
	사외 적립		일정 부분 손금산입

-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제체계는 적립금 납입단계에서 손금산입(사용자) 또는 소득공제(근로자)혜택(Exempt)을 부여하고,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비과세(Exempt)를 적용하며,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Taxed)하는 EET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음.

나. 퇴직연금 세제관련의 내용 및 특징

1) 근로자 관련 세제

□ 적립금 납입단계

- 현재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연금세제 개편으로 인해 2011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의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으로 소득공제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퇴직급여 수령 시 비과세

<표 4> 적립금 납입단계의 소득공제

현 행	개 정 안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소득공제 - 한도 : 3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도 확대 - 한도 : 400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2010. 8. 24.

□ 적립금 운용단계

-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같은 자산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수령단계에서 과세를 적용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적립된 자산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여 퇴직연금자산으로 적립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시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벌어들인 투자소득 등 모든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소득의 형태 및 규모에 상관없이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함.

□ 퇴직급여 수령단계

- 근로자가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로 구분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시금 수령 시,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퇴직일시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부과(분류과세)
 - 연금 수령 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총 수령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부과
- 또한 퇴직연금에 적립한 금액을 중도에 인출할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던 도중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함.
 - 확정기여(이하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계좌(이하 'IRA')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요양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음.
 - 연금으로 수령하는 도중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지급 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산출 후 연금지급 전 퇴직소득 대비 수령하는 일시금의 퇴직소득 비율을 곱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함¹⁾.

2) 사용자 관련 세제

(1) 사외 적립 시

-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손금 산입되는 방법이 상이함.
 - DC형 퇴직연금 또는 기업형 IRA에서는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 전액이 손금산입
 - 다만 과거로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소급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또는 퇴직신탁·보험가입에 따라 손금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납입한 부담금에서 기존 손금인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인정됨.

1)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산출관련 내용은 부록 참조

- DC형 퇴직연금에서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중 임원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달리 손금 인정한도가 설정되어 있음²⁾.
- 확정급여(이하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됨
 -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손금한도 : 당해사업연도말 퇴직급여추계액 - 당해사업연도말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당해 사업연도말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2) 사내 적립 시

- 현재 사내 적립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의 5%를 한도로 퇴직금부채의 30%까지 손금산입하도록 규정
- 다만 퇴직연금 세제개편으로 인해 2011년부터 손금인정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에는 완전폐지하는 것으로 개선³⁾

<표 5>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인정 한도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30%	☐ 손금산입 한도 조정 -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table><tr><th>‘10</th><th>‘11</th><th>‘12</th><th>‘13</th><th>‘14</th><th>‘15</th><th>‘16</th></tr><tr><td>30%</td><td>25%</td><td>20%</td><td>15%</td><td>10%</td><td>5%</td><td>0%</td></tr></table>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자료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2010. 8. 24.

- 현행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총급여액기준과 충당금 누적액 기준 중 적은 것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됨.
 - 총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자(DC형 제외)에게 당해 사업연도를 지급한 총 급여액의 5%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3)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2

- 총당금누적액 기준 : 퇴직금추계액⁴⁾ × 30% + 퇴직금전환금 계상액⁵⁾ - 당기말 세무상 총당금 잔액

3. 퇴직연금세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검토한 결과, 대체로 독립적인 퇴직연금소득공제 제도 부재, 소득공제수준 미비, 소득계층별 세제혜택 차별화 미흡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퇴직연금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독립적인 퇴직연금 소득공제제도 부재

- 우리나라의 경우 부담금 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과세 측면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세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즉,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개인연금 적립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있어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보기에 한계가 존재함.
-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적립금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적립금 수령 단계, 즉 연금소득과세측면에서도 다른 연금과 구별하지 않고 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특히, 퇴직연금의 수령액이 공적연금의 수령액과 구분되어 과세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연금의 급여와 타인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적연금의 급여가 동일하게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 4)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
 - 5)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또한 개인의 소득공제 초과불입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세제체계인 EET방식과 TEE (Taxed-Exempt-Exempt) 방식이 혼재되는 문제가 있음.

나.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수준 저조

-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2011년부터 연 400만원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소득공제 수준은 미미한 수준임.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소득공제액이 400만원에 지나지 않아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본인의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소득 재원을 확충할 유인이 적은 편임.
- 따라서 국민의 노후소득재원 마련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의 기본 취지와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다. 연금전환 및 연금수령을 위한 세제혜택 저조

- 퇴직급여 수령 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소득공제 혜택이 900만원에 지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짧은 기간 동안 노후소득 재원을 소진시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취지는 은퇴이후 노후기간 동안 필요한 노후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수령형태는 연금지급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퇴직일시금으로 수령 시 적용되는 공제비율(현재 퇴직소득금액의 45%)이 높고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일시금의 선호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연금수령보다 일시금수령이 세제혜택차원에서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⁶⁾.

6) 보험개발원,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2008. 9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연

- 퇴직보험에서 기업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제 우대조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연금재원이 소진될 가능성이 존재함.
- 최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중간정산하는 기업 및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환에 따른 세제상의 유인책이 없기 때문임.

라. 소득계층별 연금세제 차등화 부재

- 현행 퇴직연금 세제체계는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저소득계층보다 오히려 불입여력이 있는 고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현재와 같이 개인연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소득공제금액 또한 크지 않을 경우는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은 세제체계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역 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이 퇴직연금제도의 틀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부응한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금소득세를 비교하여 퇴직소득세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음.

4. 미·일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특징비교

미·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연령별·소득계층별로 세제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또한 별도의 퇴직연금 소득공제제도, 충분한 소득공제혜택,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시 세제우대조치 등을 통해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가. 미국

- 미국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형식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한 종류로 운영되며, 세제체계 또한 다양함.
 -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역사가 길어 제도 및 종류가 단순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따라 세제체계도 상이함.
 - 하나의 퇴직연금제도에서 EET방식과 TEE방식을 혼용하기 보다는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EET와 TEE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사용자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되는 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 세제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을 기타 소득과 구분하지 않고 종합과세하고 있음.
- 적립한도는 설정되지 않은 반면, 연금수령액은 195,000달러(2009년 기준)로 제한되어 있음⁷⁾.

7) 연금수령액에 대한 제한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필요시 상향조정하고 있음.

<표 6> 미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2009년)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단계	사업주	손금산입	손금산입 한도: Min(근로자 급여액의 100%, 49,000 달러)
	가입자	미적용	소득공제 한도: 16,500달러,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5,500달러 추가
운용단계		비과세	
수령단계		종류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별로 다른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음.

- DC형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401(k), Roth 401(k), 403(b), 457, Keogh, Target Benefit Plan, Money Purchase Plan, Profit Sharing Plan, Stock Bonus Plan 및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등이 존재하며 유형별 세제내용이 상이함.
-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00달러(2010년 기준)⁸⁾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 대신 퇴직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함.
 -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연간 5,500달러의 추가적립과 소득공제 허용
- Roth 401(k)는 401(k)와 반대로 적립단계에서 과세하고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는 TEE방식을 적용
- 사용자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처럼 손금산입 혜택을 제공함.

8) 미국의 경우 매년 적립금 상한액과 소득공제 상한액을 변경하지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퇴직연금제도에서 2010년에는 2009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IRA도 DC형 퇴직연금처럼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별로 다른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음.
- 전통형 IRA는 EET방식을 Roth IRA는 TEE방식의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형 IRA의 경우 50세 이하는 5,000달러, 50세 이상은 6,000달러(2010년 기준)의 적립상한이 존재하며 소득공제를 적용(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함.

나. 일본

- 일본은 1962년과 1966년에 적격 퇴직연금제도와 후생연금기금으로 대표되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2001년 신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함.
- 2001년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제도의 역할을 확대시킬 필요성 때문이었음.
- 신 DB형 퇴직연금에는 규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제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됨.
- 퇴직적립금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손금산입되고 근로자 부담금은 생명보험료 공제가 제공되며, 자산운용이자에는 비과세지만 잔고의 1%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세 과세
- 퇴직적립금을 일시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가 적립단계에서 부담한 금액과 퇴직소득공제를 제외하고 퇴직소득세를 과세
-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액에서 근로자가 적립단계에서 부담한 금액과 공적연금공제를 제외하고 연금소득세를 과세

<표 7> 일본의 퇴직연금 세제체계(2009년)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단계	사업주	손금산입	손금산입(기업형)
	가입자	생해보험료 공제(5만엔 한도)	소득공제(개인형)
운용단계		비과세 (1999~2011년 3월까지 특별법인세 연 1.173% 동결)	
수령단계	연 금	· (수령액-본인부담의 납입총액-공적 연금공제)를 소득금액으로 과세	(수령액-공적연금공제)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
	일시금	(수령액-본인부담의 납입총액-퇴직소득공제)×1/2을 소득금액으로 과세	(수령액-퇴직소득공제)×1/2을 소득금액으로 과세

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가입자각출이 있는 경우, 지급시의 과세는 가입자 각출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

자료 : 岩本 洋, 『企業을 위한 確定給出年金』, 東洋經濟新報社, 2007. 5. p.263.

□ DC형 퇴직연금은 기업형과 개인형이 있으며, 기업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금 전액을 각출하고 근로자의 추가 적립은 없음.

○ 기업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은 신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 216,000엔, DC형 퇴직연금만 도입했을 경우에는 432,000엔을 손금산입함.

- 운용단계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이자와 배당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적립금 운용이익은 특별법인세를 과세

○ 자영업자 및 기업형 퇴직연금이 없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개인형의 경우,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근로자는 연 276,000엔, 자영업자는 연 816,000엔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운용단계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이자와 배당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적립금 운용이익은 특별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과세는 신 DB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과세

5. 퇴직연금 세제제도의 개선 방향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시금 관련세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연금과 별도의 소득공제신설, 퇴직연금가입을 위한 충분한 소득공제혜택의 부여, 소득계층별 세제혜택의 차별화 및 한도설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세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가. 퇴직일시금 관련 세제의 사전정비

□ 퇴직일시금 관련 세제혜택의 축소·폐지를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세제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존재함.

○ 먼저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는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하도록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되어 있으나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폐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

<표 8> 퇴직일시금 관련 세제 개선

구 분	현 황	개 선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30% (2016년까지 단계적 축소예정)	폐지기간 단축
퇴직연금수령 시 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연금소득공제 1200만원 이상으로 조정
기존퇴직금 소득공제한도	40%	매년 10%씩 공제비율 축소·폐지
퇴직금의 퇴직연금전환 시 세제혜택	별도규정없음	- 퇴직연금 도입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 - 기존 퇴직금을 IRA에 예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 연금소득공제 수준을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퇴직금의 공제한도를 매년 10%씩 축소하여 일시금보다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기존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예치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소득세 환급조치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필요

나. 독립적인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마련

- 다른 세제와 혼재되어 있는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잠재적 이용자수와 금액면에서 개인연금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격상 국민연금과는 매우 다르므로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과세체계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의 적립금에 대해 다른 종류의 소득공제와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음.
 - 공적연금의 경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후세대에서 고령인구로의 소득이전 현상이 도래·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액을 구분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 EET 퇴직연금의 세제체계 중 일부 TEE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약화시켜 퇴직연금세제체계를 완전 EET 방식으로 변경하고 적립금 납입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급여 수령 시 소득공제한도 초과 납입분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것보다 납입단계에서의 소득공제혜택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근로자의 생애소득을 극대화 시켜주고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함.

<표 9> 퇴직일시금 관련 세제 개선

현 행	개 선
-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 2011년 400만원 한도 - 소득수준과 무관한 공제한도액 설정	- 퇴직연금도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까지는 근로자의 추가납입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허용 - 소득수준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 검토

-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중 근로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401(k)는 다른 연금제도와 달리 가입당시 소득공제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다. 충분한 적립 및 연금수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퇴직연금 적립단계에서 근로자의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인연금과 함께 퇴직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본적으로 분리시킨 이후 퇴직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
- 미국의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인 401(k)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당 16,500달러이며 50세 이상 근로자는 5,500달러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제공함.
- 미국 50세 미만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규모가 1인당 GDP의 35.6%이며 50세 이상은 47.4%에 달함.
 - 반면, 한국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1인당 GDP의 14.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무할 수 있음.

<표 10> 한·미의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교(DC형)

구 분	소득공제 가정	1인당 GDP(2009)(a)	소득공제 금액(b)	비율(b/a)×100
한 국	400만원 가정	20,488,800원	4,000,000원	19.5%
	300만원 가정	20,488,800원	3,000,000원	14.6%
미 국	50세 이상	46,381달러	22,000달러	47.4%
	50세 미만	46,381달러	1,6500달러	35.6%

주 : 환율 1달러당 1,200원을 적용하여 한국 1인당 GDP 계산

-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적립한도액과 소득공제 규모를 연간 306,000엔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른 소득공제와 구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세제혜택이 큼.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충분히 증가시켜 소득수준 및 근속연수 등과 관계없이 연금수령이 일시금수령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세제체계를 개선시켜야 함.
 - 특히, 연금수령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연금수령 기간을 되도록 길게 설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화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퇴직적립금이 상속 등과 같은 방법으로 오용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기간을 기대수명 이상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라. 계층별 차등화 및 한도설정

- 적립단계에서 세제혜택을 과감히 증가시킬 필요는 있으나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납입단계에서 모든 소득계층별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제혜택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 불입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로 소득계층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

□ 근로자,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역 근로자 등 가입자의 특성과 가입목적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의 경우 추가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는 등 가입자 특성별로 이미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다르고 퇴직연금에의 가입 및 추가납입의 목적이 다르므로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구분되어 만들어져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소득공제가 차등되어 적용되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소득공제면에서 우대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제를 차등화 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 국세청,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2010. 2.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2010. 8. 24.
-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2008. 10.
- 류건식 외 2,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3.
- 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보험연구원, CEO-Report, 2009. 10.
- 방하남외 3,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2005. 10.
- 보험개발원,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2008. 9.
- 이명규외 1, 『퇴직연금(Ⅱ)』, 한국금융연수원, 2010. 8.
- 岩本 洋, 『企業을 위한 確定拠出年金』, 東洋經濟新報社, 2007. 5. p.263.
- 坪野剛司, 『新企業年金』, 日本經濟新聞社, 2006. 12.
- OECD,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2009
- World Bank Report,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부록>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산출

□ 퇴직소득세 측면

○ 퇴직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연분연승법에 의해 과세

- 퇴직소득에서 급여비례 공제액과 근무연수별 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근무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세액 산출

<부록표 1>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정률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 × 45%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 $\frac{1}{\text{근속연수}}$ × 기본세율(8~35%) × 근속연수(연분연승법)

<부록표 2> 근무연수별 퇴직소득 공제

근무연수	퇴직소득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부록표 3> 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96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74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 연금소득세 측면

○ 연금형태의 수령액을 모두 합한 총 연금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과세

-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 이하시 5.5%(주민세포함) 원천징수,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 초과시 여타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적용(연금소득 공제한도는 연간 900만원)

<부록표 4> 연금소득 공제액

총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초과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